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1. . . (제 회)	

부동산거래신고등에관한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노형욱 (국토교통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1.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공공주도 3080⁺ 대책」(’21.2.4) 후속조치로, 소규모 토지에 대한 투기 거래를 억제하여 토지거래허가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토지 거래허가 대상 면적의 기준을 조정하고,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 대책」(’21.3.29) 후속조치로, 토지 거래 시 자금조달의 투명성이 강화될 수 있도록 일정 거래금액 이상 토지 취득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토지거래허가 대상 면적기준 조정(안 제9조제1항제1호)

현행 건축법령상 용도지역별 대지 분할제한 면적기준을 준용하여 토지거래허가 대상 기준면적을 재조정(’78년 허가제 최초 시행 당시 건축법령상의 대지 분할제한 면적기준을 허가 대상 기준면적으로 활용)

나. 토지 취득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안 별표1)

수도권·지방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의 경우 거래가격과 무관하게, 기타 지역의 경우 6억원 이상 토지(건축물 있는 토지를 제외한 순수 토지)를 매수하는 경우 시·군·구청에 토지취득자금 조달 및 이용 계획을 신고토록 의무화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없 음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호가목 중 “180제곱미터”를 “60제곱미터”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200제곱미터”를 “150제곱미터”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660제곱미터”를 “150제곱미터”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100제곱미터”를 “200제곱미터”로 하며, 같은 호 마목 중 “90제곱미터”를 “60제곱미터”로 한다.
별표 1 제3호 중 “거래당사자”를 “매수인”으로 하고, 같은 표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에 소재하는 토지(「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 있는 토지는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를 매수하거나 그 외의 지역에서 실제 거래가격이 6억원 이상(계약 체결 1년 이내에 연접 토지에 대해 추가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지분거래한 기존 계약 체결 토지에 대해 추가 지분을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 거래가격을 합산하여 계산한다)인 토지를 매수하는 경우(매수인 중 국가등이 포함되어 있거나 법 제11조에 따라 토지거래계약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거래인 경우는 제외한다)	가. 거래대상 토지의 취득에 필요한 자금의 조달계획 나. 거래대상 토지의 이용계획
---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9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10조에 따른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며, 별표1의 개정규정
은 이 영 시행 이후 거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토지거래계약허가 면제 대상 토지면적 등) ① 법 제11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별 면적”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면적을 말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허가구역을 지정할 당시 해당 지역에서의 거래 실태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면적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해당 기준면적의 10퍼센트 이상 30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따로 정하여 공고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9조(토지거래계약허가 면제 대상 토지면적 등) ① ----- ----- ----- ----- --. ----- ----- ----- ----- ----- ----- ----- ----- ----- ----- ----- -----.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이하 “도시지역”이라 한다): 다음 각 목의 세부 용도지역별 구분에 따른 면적	1. ----- ----- ----- ----- ----- -----
가. 주거지역: <u>180제곱미터</u>	가. ----- <u>60제곱미터</u>
나. 상업지역: <u>200제곱미터</u>	나. ----- <u>150제곱미터</u>
다. 공업지역: <u>660제곱미터</u>	다. ----- <u>150제곱미터</u>

라. 녹지지역: <u>100제곱미터</u>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구 분에 따른 용도지역의 지 정이 없는 구역: <u>90제곱미 터</u> 2. (생 략) ② · ③ (생 략)	라. ----- <u>200제곱미터</u> 마. ----- ----- ----- <u>60제곱미 터</u> 2. (현행과 같음) ② · ③ (현행과 같음)
---	--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	
연 락 처	(044) 201 - 3402